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

전문공보관 형사2부장 김해경
전화 063-472-4470 / 팩스 063-472-4470

보도자료 2021. 3. 9.(화)

제 목 **친부모의 생후 2주 남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결과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 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※ 2021. 3. 5.~8.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금일(3. 9.)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김기룡)는 생후 2주된 친아들을 학대하고, 피해자에게 뇌출혈, 두개골골절 등의 두부손상을 발생시켜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면서 병원에 후송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**친부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**하고,
- 피해자를 학대하고, 친부가 피해자의 두부를 손상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**친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**하였음
- 검찰은 친부모에 대한 보완 조사, 주거지 탐문 및 압수수색, 법의학감정, 의료자문, 임상심리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음
- 한편,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**친부의 학대행위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장녀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청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**을 논의하였음

1

피고인 및 피해자

- 피고인 A○○, 친부 [구속], B○○, 친모 [구속]
- 피해자 C○○ [당시 생후 2주, 친자(차남)]
 - ※ 장녀(D○○, 피해자 C의 누나, 현재 1세)는 사건발생 전 피고인 A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시설 입소, 현재 영아원 재원

2

공소사실 요지

1 피고인 A

- '21. 2. 5.경 피해자를 재우다가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침대에 던져 학대함 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
- '21. 2. 7.경 피해자를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개의 선상 골절, 외상성 뇌출혈 등 두부손상을 가하고,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숨을 잘 못 쉬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면서 병원 후송 등 피해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'21. 2. 9.경 피해자가 사망하게 함 [살인]

2 피고인 B

- '21. 2. 3.경 피해자가 움직여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힘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, '21. 2. 5. 피해자가 먹던 분유를 토하자 손바닥으로 얼굴, 허벅지, 발바닥을 때려 학대함 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
- '21. 2. 7.경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생명의 위협을 초래한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하여 '21. 2. 9.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

3

주요 수사경과

- '21. 2. 9. 피해자 사망
- '21. 2. 12. 피고인 A, B 각 '아동학대치사'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
- '21. 2. 18. 전북경찰청, 각 '살인' 등으로 의율변경 후 송치
- '21. 2. 19.~3. 3. 피고인들, 참고인 조사, 주거지 압수수색, 법의학 감정 및 의료자문, 임상심리분석
 - ※ 2. 25. 구속기간 연장(연장 만기 3. 9.)
- '21. 3. 4.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
- '21. 3. 9. 피고인 A, B 각 구속기소

검찰은 법의학 감정(구체적인 사망원인 및 살해 방법 등 확인), 의료자문 의뢰(사망 전 피해자의 증상 확인), 119신고 녹음파일 입수(신고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거짓말 확인), 임상심리분석(피고인들의 심리 및 감정상태 확인)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행 실체를 명확히 규명함

4

수사 결과

① 피해자의 사망원인 및 피고인 A의 살인

- 피해자는 우측 이마부위와 양측 정수리 부위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두피하출혈(뇌출혈)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골절(2개소) 등에 따른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음
- 피고인 A의 살인 동기 및 고의는, 피고인 B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가 주위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,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(ADHD)로 인한 공격성 발현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됨

② 피고인 B의 아동학대치사

-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던져 피해자가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발작 및 경련을 일으키고 분유를 잘 먹지 못하고 토하며 숨을 헐떡거리는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과 그후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린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
- 피고인 B의 범행 동기는, 제왕절개로 피해자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,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하고, 육아에 대한 지식부족 및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됨

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선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,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출산 및 성장 과정에 대한 글 및 육아용품, 육아 방법 등에 관한 질문글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피해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을 하는 등 조치를 했던 점, 피해자의 이상증상 발현 이후에는 주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의 사망 직전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 A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, ‘아동학대치사’로 기소함

※ 사경은, 피고인 A, B 모두 ‘살인’의 공범으로 의율하여 송치

●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('21. 3. 4.)

- 아동보호전문기관,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장녀 D의 현재상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함
- D에 대하여,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금전적 지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 치료 등의 지원방안 검토함
- 참석자들은 D를 위해서 피고인들의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
- 또한 아동학대사건의 신속·정확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핫라인을 구축하고, 경찰·지자체·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분산된 아동학대 조사 및 지원책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

● 친권상실심판 청구 예정

-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는 등 D의 보호책을 강구한 바, 비록 D가 본건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, 피고인들이 영아원에 있는 D에게 그 동안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, 본건으로 피고인들의 정상적인 양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친권상실심판 청구 예정임

-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D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음 ☑